
2023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사기간 : 2024. 4. 3. ~ 5. 3.(31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소 재 권
• 결산검사위원	송 재 천
• 결산검사위원	안 춘 자
• 결산검사위원	문 한 경
• 결산검사위원	김 영 배
• 결산검사위원	배 명 호
• 결산검사위원	김 종 식
• 결산검사위원	서 정 구
• 결산검사위원	김 윤 일
• 결산검사위원	구 본 승

검 사 의 건 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 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2023회계연도

- | | | |
|----------|--------------|-----------|
| 1. 결산개요 | 2. 세입·세출의 결산 | 3. 재무제표 |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금고의 결산 |

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 함에 있어 중구민을 대표하여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정산,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세입이 감소했던 한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악화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강조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각오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세입은 6,7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5억원(5.5%)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총 5,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4.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최근 징수율이 3년 연속 90%를 하회하고, 특히 2023회계연도는 코로나19 상황종료로 2022회계연도에 비해 징수 여건이 나아졌음을 고려할 때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3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021년 12.1%, 2022년 11.7%, 2023년 14.1%로 10% 이상 징수결정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당초 세입추계가 부정확했음을 의미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는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예산현액과 실제 세입이 달라지고 세입의 결손이나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 세입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결국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재원의 발생을 의미하며,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세입예산이 미편성되면 그만큼 세출예산도 편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락된 세입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매년 불용률이 높은 예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예산과목 중 국내여비의 최근 3년간 결산 상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매년 40%를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실비 성격으로 예산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매년 20억 원 상당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적기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년간의 평균 집행률 등 통계치를 활용해서 일정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 발생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나 예산변경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산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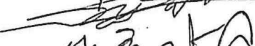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73건 2,269백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대폭 (32건 90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과거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전용이 늘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니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 사업계획의 정확한 수립 등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부적절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과 결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결산도 잘 못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숙고하여 향후 더욱 개선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중구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적극적으로 시정 및 보완되기를 바라며, 모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입 징수율을 높이고 숨겨진 재원을 발굴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중구민을 대표하여 권고합니다.

2024. 5.

• 대 표 위 원	소 재 권	
• 결산검사위원	송 재 천	
• 결산검사위원	안 춘 자	
• 결산검사위원	문 한 경	
• 결산검사위원	김 영 배	
• 결산검사위원	배 명 호	
• 결산검사위원	김 종 식	
• 결산검사위원	서 정 구	
• 결산검사위원	김 윤 일	
• 결산검사위원	구 본 승	

목 차

I . 결산의 확인

1. 세입 · 세출 결산	-----	1p
2. 세 입	-----	11p
3. 세 출	-----	16p
4. 다음년도 이월비 결산	-----	18p
5. 예비비 결산	-----	18p
6. 기금의 결산	-----	19p
7. 채권의 결산	-----	20p
8. 채무의 결산	-----	20p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	-----	20p
10.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22p
11.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	23p
12. 재무제표의 결산	-----	24p
13. 성과보고서	-----	25p

II . 결산검사결과

○ 총 평	-----	26p
○ 시정요구 사항	-----	36p

I . 결산의 확인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 황 -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 월 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660,190,927,060	671,431,290,581	539,481,976,549	131,949,314,032
일반회계	604,014,664,050	612,168,799,204	526,246,369,229	85,922,429,975
특별회계	56,176,263,010	59,262,491,377	13,235,607,320	46,026,884,057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660,190,927,060원에 대하여(전년도이월금 28,766,473,060원 포함)

세입결산액은 671,431,290,58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9,481,976,549원이다.

-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31,949,314,032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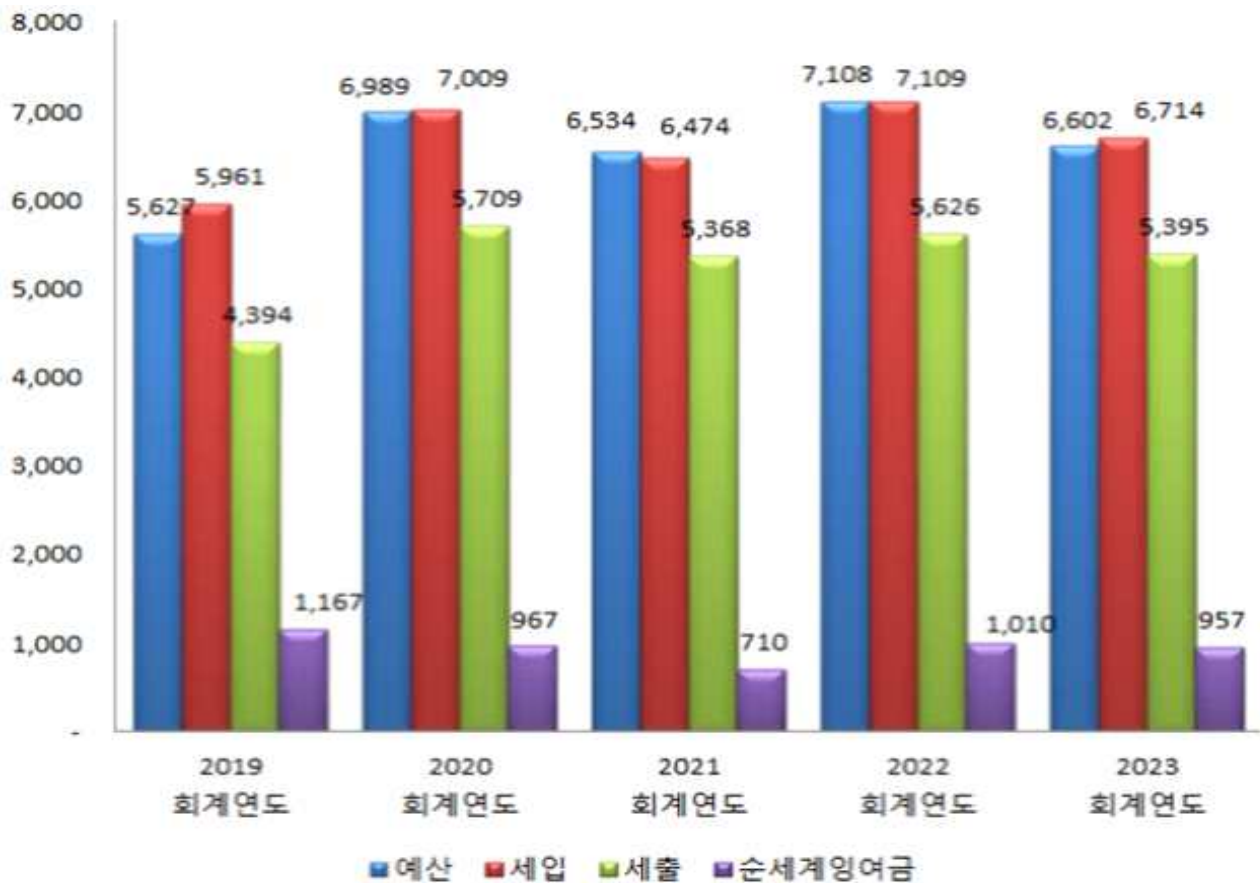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27,455,404,44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8,776,116,11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717,793,477원입니다.

○ 최근 5년간 세입·세출·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예산	5,627	6,989	6,534	7,108	6,602
세입	5,961	7,009	6,474	7,109	6,714
세출	4,394	5,709	5,368	5,626	5,395
순세계잉여금	1,167	967	710	1,010	957

나. 세입결산총괄

(단위: 원)

과목 장·관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㉔	수납액				정리보류액 ㉕	미수납액 ㉖=㉓-㉔-㉕	비율(%)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④/㉓	④/㉖
합 계	631,424,454,000	28,766,473,060	660,190,927,060	753,422,023,861	672,659,741,111		1,228,450,530	671,431,290,581	21,076,956,410	60,913,777,890	101.7 %	89.1 %
지방세 수입	195,454,628,000		195,454,628,000	189,520,863,890	184,025,087,930		999,281,770	183,025,806,160	184,231,930	6,310,625,800	93.6 %	96.6 %
보통세	194,721,941,000		194,721,941,000	185,855,509,360	183,243,857,420		998,977,350	182,244,880,070	1,253,750	3,609,365,540	93.6 %	98.1 %
지난년도 수입	732,687,000		732,687,000	3,665,154,530	781,220,510		304,420	780,916,090	182,978,180	2,701,260,260	106.6 %	21.3 %
세외수입	93,765,713,000		93,765,713,000	182,684,059,307	107,417,390,857		229,153,250	107,188,237,607	20,892,723,480	54,803,097,220	114.3 %	58.7 %
경상적세외수입	67,560,830,000		67,560,830,000	77,568,470,107	77,325,249,667		60,271,140	77,264,978,527		303,491,580	114.4 %	99.6 %
임시적세외수입	11,101,872,000		11,101,872,000	80,508,321,990	12,474,546,130		153,919,520	12,320,626,610	20,892,723,480	47,294,971,900	111.0 %	15.3 %
지방행정체제·부과금	15,103,011,000		15,103,011,000	24,607,295,210	17,617,595,060		14,962,590	17,602,632,470		7,004,633,740	116.6 %	71.5 %
지방교부세	15,829,000,000		15,829,000,000	14,989,847,650	14,989,847,650			14,989,847,650			94.7 %	100.0 %
지방교부세	15,829,000,000		15,829,000,000	14,989,847,650	14,989,847,650			14,989,847,650			94.7 %	100.0 %
조정교부금등	27,107,777,000		27,107,777,000	41,156,292,820	41,156,292,820			41,156,292,820			151.8 %	100.0 %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6,807,777,000		26,807,777,000	41,156,292,820	41,156,292,820			41,156,292,820			153.5 %	100.0 %
시·군조정교부금등	300,000,000		300,000,000								0.0 %	
보조금	178,008,204,000		178,008,204,000	174,675,522,130	174,675,522,130			174,675,522,130			98.1 %	100.0 %
국고보조금등	95,043,619,000		95,043,619,000	94,345,828,140	94,345,828,140			94,345,828,140			99.3 %	100.0 %
시·도비보조금등	82,964,585,000		82,964,585,000	80,329,693,990	80,329,693,990			80,329,693,990			96.8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259,132,000	28,766,473,060	150,025,605,060	150,395,639,084	150,395,599,724		15,510	150,395,584,214		54,870	100.2 %	100.0 %

(단위:원)

과목 장·관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㉔	수납액				정리보류액 ㉕	미수납액 ㉖=㉓-㉔-㉕	비율(%)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④/㉓	④/㉔
보전수입등	121,259,132,000	28,766,473,060	150,025,605,060	150,395,639,084	150,395,599,724		15,510	150,395,584,214		54,870	100.2 %	100.0 %
일 반 회 계	575,675,950,000	28,338,714,050	604,014,664,050	668,469,914,214	613,340,203,764		1,171,404,560	612,168,799,204	3,661,894,340	42,639,220,670	101.3 %	93.0 %
지방세수입	195,454,628,000		195,454,628,000	199,520,663,890	194,025,087,930		999,281,770	193,025,806,160	184,231,930	6,310,625,800	93.6 %	96.6 %
지나년도수입	732,687,000		732,687,000	3,665,154,530	781,220,510		304,420	780,916,090	182,978,180	2,701,260,280	106.6 %	21.3 %
보통세	194,721,941,000		194,721,941,000	185,855,509,360	183,243,867,420		998,977,350	182,244,890,070	1,253,750	3,609,365,540	93.6 %	98.1 %
세외수입	78,619,003,000		78,619,003,000	128,814,872,850	89,180,777,720		172,107,260	89,008,670,460	3,477,662,410	36,328,540,000	113.2 %	69.1 %
경상적세외수입	60,149,960,000		60,149,960,000	68,766,215,220	66,522,994,780		60,271,140	68,462,723,640		303,491,580	113.8 %	99.6 %
임시적세외수입	9,136,032,000		9,136,032,000	44,585,192,150	10,865,256,570		97,063,390	10,768,173,180	3,477,662,410	30,339,356,560	117.9 %	24.2 %
지방행정체재·부과금	9,333,011,000		9,333,011,000	15,463,465,480	9,792,526,370		14,752,750	9,777,773,620		5,685,691,860	104.8 %	63.2 %
지방교부세	15,829,000,000		15,829,000,000	14,989,847,650	14,989,847,650			14,989,847,650			94.7 %	100.0 %
지방교부세	15,829,000,000		15,829,000,000	14,989,847,650	14,989,847,650			14,989,847,650			94.7 %	100.0 %
조정교부금등	27,107,777,000		27,107,777,000	41,156,292,820	41,156,292,820			41,156,292,820			151.8 %	100.0 %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6,807,777,000		26,807,777,000	41,156,292,820	41,156,292,820			41,156,292,820			153.5 %	100.0 %
시·군조정교부금등	300,000,000		300,000,000								0.0 %	
보조금	177,612,204,000		177,612,204,000	174,317,022,130	174,317,022,130			174,317,022,130			98.1 %	100.0 %
국고보조금등	94,905,119,000		94,905,119,000	94,207,328,140	94,207,328,140			94,207,328,140			99.3 %	100.0 %
시·도비보조금등	82,707,085,000		82,707,085,000	80,109,693,990	80,109,693,990			80,109,693,990			96.9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053,338,000	28,338,714,050	109,392,052,050	109,671,214,874	109,671,175,514		15,510	109,671,160,004		54,870	100.3 %	100.0 %

(단위:원)

과목 장·관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㉔	수납액				정리보류액 ㉕	미수납액 ㉖=㉔-㉕-㉗	비율(%)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④/㉓	④/㉔
	보전수입등	81,053,338,000	28,338,714,050	109,392,052,050	109,671,214,874	109,671,175,514		15,510	109,671,160,004		54,870	100.3 %	100.0 %
기타특별회계		55,748,504,000	427,759,010	56,176,263,010	94,952,109,667	59,319,537,347		57,045,970	59,262,491,377	17,415,061,070	18,274,557,220	105.5 %	62.4 %
세외수입		15,146,710,000		15,146,710,000	53,889,185,457	18,236,613,137		57,045,970	18,179,567,167	17,415,061,070	18,274,557,220	120.0 %	33.7 %
경상직세외수입		7,410,870,000		7,410,870,000	8,802,254,887	8,802,254,887			8,802,254,887			118.8 %	100.0 %
임시직세외수입		1,965,840,000		1,965,840,000	35,923,129,840	1,609,289,560		56,836,130	1,552,453,430	17,415,061,070	16,955,615,340	79.0 %	4.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770,000,000		5,770,000,000	9,143,800,730	7,825,068,690		209,840	7,824,858,850		1,318,941,880	135.6 %	85.6 %
보조금		396,000,000		396,000,000	358,500,000	358,500,000			358,500,000			90.5 %	100.0 %
국고보조금등		138,500,000		138,500,000	138,500,000	138,500,000			138,500,000			100.0 %	100.0 %
시·도비보조금등		257,500,000		257,500,000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85.4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205,794,000	427,759,010	40,633,553,010	40,724,424,210	40,724,424,210			40,724,424,210			100.2 %	100.0 %
보전수입등		40,205,794,000	427,759,010	40,633,553,010	40,724,424,210	40,724,424,210			40,724,424,210			100.2 %	100.0 %

다. 세출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사=다-라-라-라			
					계 라= ①+②+③	영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사=④+⑤ +⑥+⑦+⑧+⑨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결감액 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이 발생 ⑥
합 계	631,424,454,000	26,766,473,060	658,190,927,060	538,481,976,549	27,465,404,440	9,012,715,000	18,442,688,440		11,159,612,918	62,093,933,153	4,461,605,331	290,882,740	3,569,047,922
일반공공행정	48,343,195,000	1,096,623,360	49,439,818,360	37,562,562,139	3,997,983,590	529,977,000	3,468,006,590		2,026,591,860	5,622,680,781	909,111,188	30,593,079,972	42,250,206,000
											117,465,710	61,316,720	2,682,159,740
											160,937,528	2,800,801,063	
공공질서및안전	7,010,605,000	1,520,000,320	8,530,605,320	7,630,977,821	143,186,000		143,186,000		19,894,240	736,547,259	191,569,210	4,625,150	109,799,930
											223,647,330	206,865,639	
												11,433,000	
교육	13,236,289,000	66,461,480	13,361,750,480	12,202,194,210	153,619,000		153,619,000		8,963,360	996,953,910		985,520,910	
문화및관광	29,860,095,000	1,435,849,420	31,295,944,420	28,670,323,160	700,755,360	369,265,000	311,470,360		269,494,368	1,655,371,532	812,990,712	11,989,160	40,874,960
											14,372,760	775,143,960	
환경	40,138,567,000	965,508,030	41,104,075,030	36,517,438,238	2,351,498,020	660,000,000	1,691,498,020		71,936,660	3,163,202,112	570,300	8,260,000	79,381,000
											136,343,440	2,938,627,372	
사회복지	239,261,347,000	4,867,412,240	244,138,759,240	223,360,105,172	7,161,857,530	2,899,832,000	4,262,025,530		6,876,511,773	6,738,284,765	2,751,976,925	13,503,000	282,256,321
											7,770,140	3,682,778,379	
보건	13,314,735,000	1,700,866,270	15,015,601,270	12,320,699,974	585,757,400	56,167,000	529,590,400		800,163,360	1,308,960,536	129,520,220	2,100,000	437,960
											2,434,770	1,174,487,596	
농림해양수산	716,464,000		716,464,000	626,826,970						11,261,941	78,375,08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322,369,000	4,137,340,480	16,459,729,480	10,069,722,108	4,865,922,940	1,494,770,000	3,391,152,940		731,925,208	772,159,226	136,925,365		110,451,501
											800,000	523,962,370	
교통및물류	19,860,395,000	3,337,759,010	23,198,154,010	18,967,699,626	2,357,797,990	1,348,466,000	1,009,332,990		42,096,360	1,810,563,004	62,626,800	51,361,000	100,456,410
											244,009,560	1,332,110,234	
국토및지역개발	15,630,950,000	11,369,652,420	26,990,602,420	19,462,484,610	5,117,026,610	1,634,219,000	3,482,807,610		186,633,560	2,224,457,610	107,357,030	20,348,000	32,672,100
											118,766,660	1,945,284,820	
예비비	43,963,206,000	△1,713,000,000	42,250,206,000							42,250,206,000			
													42,250,206,000
기타	147,669,217,000		147,669,217,000	133,040,942,521					112,123,160	14,536,151,329	102,012,880	105,926,710	160,569,030
												14,167,652,719	
일반회계	575,675,950,000	26,336,714,060	604,014,664,060	526,246,369,229	26,745,228,450	9,012,715,000	17,732,513,450		11,056,004,568	39,965,061,813	4,409,281,541	251,310,740	3,569,047,922
											909,111,188	29,234,110,422	1,572,200,000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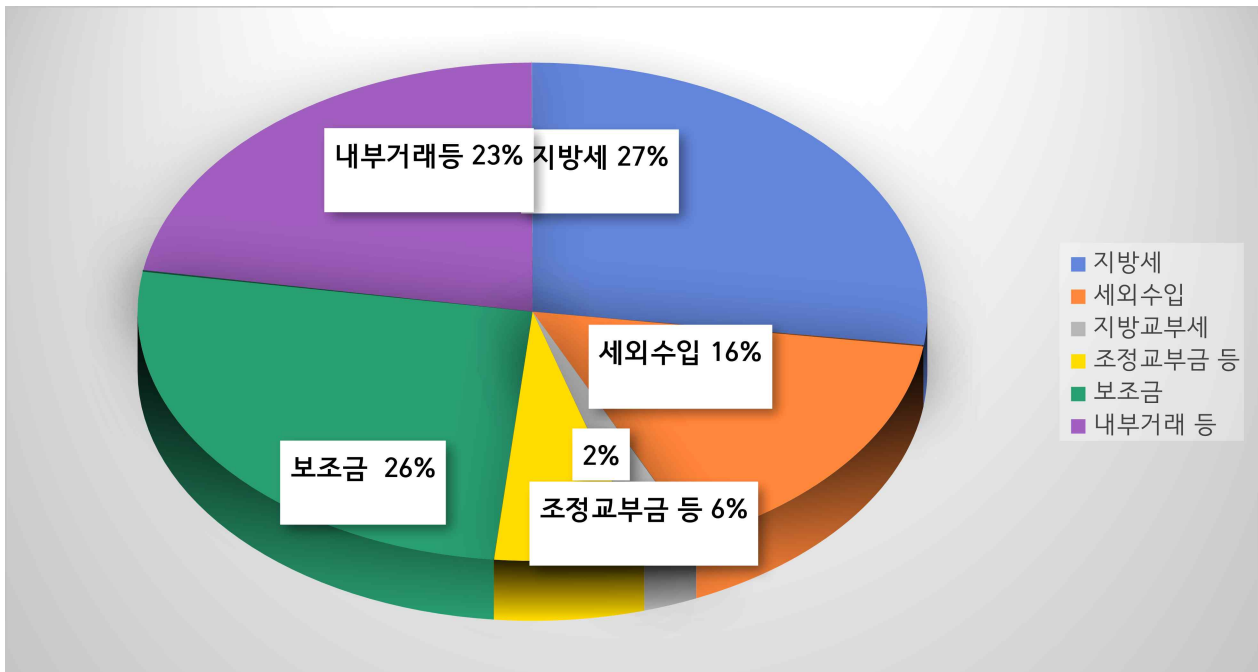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㉔	예산성립후 증감액 ㉕	예산현액 ㉖=㉔+㉕	지출액 ㉗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㉘	집행잔액 ㉙=㉔-㉗-㉘-㉚			
					계 ㉚= ①+②+③	영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㉛=④+⑤ +⑥+⑦+⑧+⑨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액 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 발생 ⑥
											낙찰차액 ⑦	지출잔액 ⑧	예비비 ⑨
일반공공행정	48,343,195,000	1,096,623,390	49,439,818,390	37,592,562,139	3,997,983,590	529,977,000	3,468,006,590	2,026,591,880	5,822,680,781	117,465,730	61,316,720	2,682,159,740	
											160,937,528	2,800,801,033	
											191,589,230	4,625,150	109,799,500
공공질서및안전	7,010,605,000	1,520,000,330	8,530,605,330	7,630,977,821	143,186,000		143,186,000	19,894,240	736,547,259	223,647,330	206,885,639		
												11,433,000	
												985,530,910	
교육	13,293,289,000	68,461,480	13,361,750,480	12,202,194,210	153,619,000		153,619,000	8,968,360	996,953,910		812,960,712	11,989,160	40,874,950
											14,372,760	775,143,950	
											570,300	8,280,000	79,381,000
문화및관광	29,860,095,000	1,435,649,420	31,295,944,420	28,670,323,190	700,755,360	389,226,000	311,470,360	269,494,368	1,655,371,532	136,925,355	2,938,627,372		
											2,751,976,925	13,503,000	282,256,321
											7,770,140	3,682,777,158	
환경	40,138,567,000	965,509,030	41,104,076,030	35,517,436,238	2,351,498,020	660,000,000	1,691,498,020	71,936,660	3,163,202,112	129,520,220	2,100,000		
											2,434,770	1,174,487,596	
												18,570,189	
사회복지	238,898,797,000	4,857,412,240	243,756,199,240	223,038,866,953	7,161,857,530	2,899,832,000	4,262,025,530	6,817,191,203	6,738,283,544	136,925,355	800,000	523,982,370	
											40,303,030	18,213,000	100,456,430
											244,009,560	242,017,695	
보건	13,314,735,000	1,700,866,270	15,015,601,270	12,320,699,974	585,757,400	56,167,000	529,590,400	800,163,360	1,308,980,536	107,357,030	20,348,000		32,672,100
											118,795,600	1,945,284,820	
농림해양수산	716,464,000	716,464,000	626,826,970					11,261,941	78,375,089			59,804,9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322,389,000	4,137,340,480	16,459,729,480	10,069,722,108	4,895,922,940	1,494,770,000	3,391,152,940	731,925,205	772,159,226	800,000	523,982,370		110,451,501
교통및물류	9,387,748,000	2,910,000,000	12,297,748,000	10,003,321,725	1,647,622,000	1,348,465,000	299,157,000	1,805,600	644,968,675	40,303,030	18,213,000		
											244,009,560	242,017,695	
국토및지역개발	15,630,950,000	11,359,652,420	26,990,602,420	19,462,484,610	5,117,026,610	1,634,219,000	3,482,807,610	186,633,560	2,224,457,610	107,357,030	20,348,000		
											118,795,600	1,945,284,820	
예비비	3,285,200,000	△1,713,000,000	1,572,200,000							1,572,200,000			1,572,200,000
기타	143,473,925,000		143,473,925,000	129,110,951,311				112,123,150	14,250,851,539	102,012,680	99,502,710		150,559,020
												13,888,776,929	
기타특별회계	55,748,504,000	427,759,010	56,176,263,010	13,235,607,320	710,175,990		710,175,990	101,608,360	42,128,871,340	42,323,750	39,572,000		
												1,368,969,550	40,678,006,000
사회복지	382,560,000		382,560,000	321,238,209				61,320,570	1,221			1,221	
교통및물류	10,472,647,000	427,759,010	10,900,406,010	8,964,377,901	710,175,990		710,175,990	40,287,750	1,165,564,329	42,323,750	33,148,000		
												1,090,092,539	

(단위:원)

구 분	예산액 ㉔	예산성립후 증감액 ㉕	예산현액 ㉖=㉔+㉕	지출액 ㉗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㉘	집행잔액 ㉙=㉔-㉗-㉘-㉚			
					계 ㉚= ㉑+㉒+㉓	영시 이월 ㉑	사고 이월 ㉒	계속비 이월 ㉓		계 ㉙=㉔+㉕+ ㉖+㉗+㉘+㉚	보조금 정산잔액 ㉛	예산절감액 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 발생 ㉝
											낙찰차액 ㉞	지출잔액 ㉟	예비비 ㊱
예비비	40,678,006,000		40,678,006,000						40,678,006,000			40,678,006,000	
기타	4,215,291,000		4,215,291,000	3,929,991,210					285,299,790		6,424,000		
											278,875,790		

라. 도표로 본 세입 · 세출 결산총괄

세입현황



금년도 세입결산액은 671,431,29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1.17%인 612,168,799천원, 특별회계가 8.83%인 59,262,49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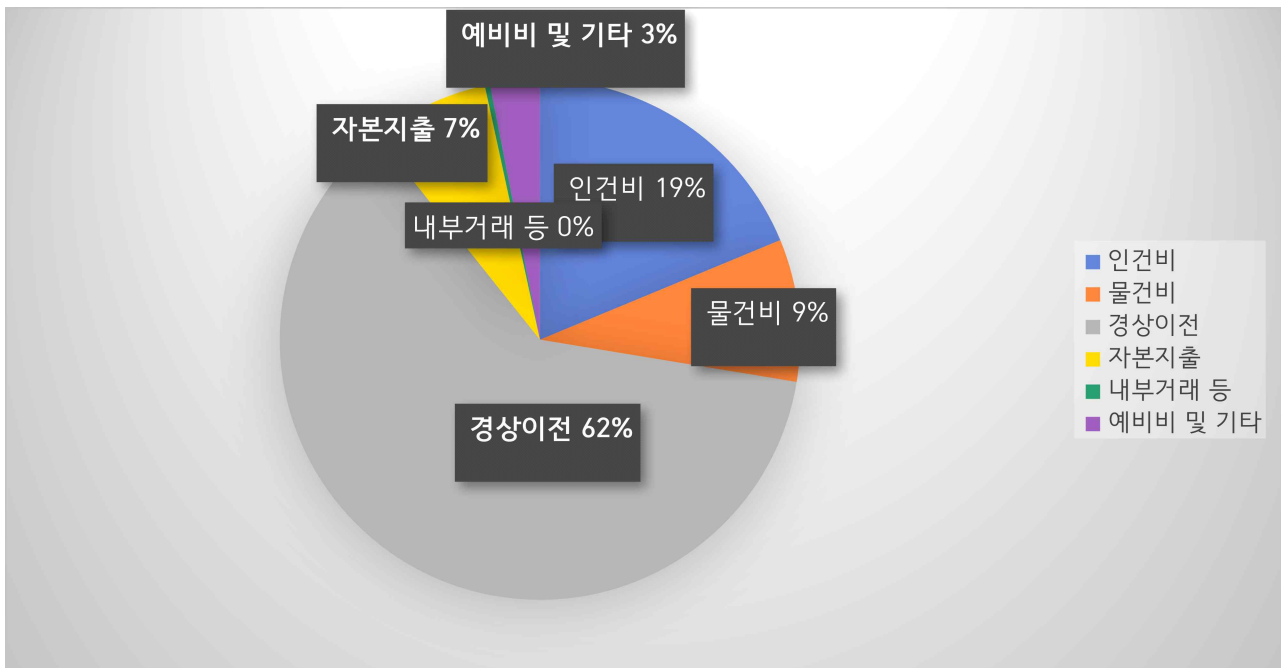
(의료급여 0.66%인 393,66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8.17%인 58,868,82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원별 결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구분		세입결산액	비율(%)
합계		671,431,290,581	100
일반회계	소계	612,168,799,204	91.2
	지방세	183,025,806,160	29.9
	세외수입	89,008,670,440	14.5
	지방교부세	14,989,847,650	2.4
	조정교부금 등	41,156,292,820	6.7
	보조금	174,317,022,130	2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671,160,004	17.9
특별회계	소계	59,262,491,377	8.8
	세외수입	18,179,567,167	2.7
	보조금	358,500,000	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724,424,210	6.0

세출현황



금년도 세출결산액은 539,481,97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7.55%인 526,246,369천원, 특별회계가 2.45%인 13,235,607천원
(의료급여기금0.06%인 321,23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39%인 12,914,36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별 결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구 분		세출결산액	비율(%)
합 계		539,481,976,549	100
일 반 회 계	소 계	526,246,369,229	97.55
	인 건 비	98,416,545,945	18.24
	물 건 비	46,144,715,362	8.55
	경 상 이 전	326,164,679,632	60.46
	자 본 지 출	38,369,007,400	7.11
	내 부 거 래	1,771,681,000	0.33
	예비비 및 기타	15,379,739,890	2.85
특 별 회 계	소 계	13,235,607,320	2.45
	인 건 비	2,724,011,800	0.5
	물 건 비	1,606,458,281	0.3
	경 상 이 전	6,571,997,300	1.22
	자 본 지 출	1,118,337,520	0.21
	내 부 거 래	1,214,802,419	0.23
	예비비 및 기타	1,507,383,030	0.26

마. 이월액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31,949,314천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므로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은	:	9,012,715,000원	
- 사고이월은	:	18,442,689,440원	
- 계속비이월은	:	0원	
-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	8,776,116,115원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717,793,477원이다.

2. 세 입

가. 일반회계

-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 수 납 액 (라=나-다)	비율(%)	
					다/가	다/나
2023	604,014,664,050	658,469,914,214	612,168,799,204	46,301,115,010	101.3	93
2022	657,302,348,153	700,855,778,142	655,352,199,182	45,503,570,960	99.7	93.5
증감	53,287,684,103	42,385,863,928	43,183,399,978	797,544,050	81	101.9

○ 2023회계연도 수납액 612,168,799,204원은 예산현액의 101.3%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99.7%보다 1.6% 높아졌고 수납율은 93%로서 지난 2022회계연도 93.5%보다 0.5% 높아졌다.

- 미수납액 46,301,115,010원은 징수결정액의 7.0%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661,894,340원이며,
 (주요사유는 무재산이 70.9%인 2,599,630,370원, 시효소멸이 26.8%인 981,487,810원, 행방불명이 1.1%인 45,649,320원, 평가액부족 0.9%인 35,089,040원에
 기인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42,639,220,670원이다.

이월된 미수납액의 목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지방세수입	보 통 세	3,609,365,540원
	지난연도 수입	2,701,260,260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303,491,580원
	임시적세외수입	30,339,356,56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685,691,860원

미수납의 주요사유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계	사 유 별			
		① 무재산	② 행방불명	③ 납세태만	④ 폐업 또는 부도
비 율	100%	12.1%	0.1%	67.4%	5.1%
합 계	60,913,777,890	7,389,789,530	80,970,060	41,067,494,280	3,103,950,030
일반회계	42,639,220,670	1,354,175,430	80,970,060	34,864,165,240	86,142,990
특별회계	18,274,557,220	6,035,614,100	-	6,203,329,040	3,017,807,040

구 분	사 유 별						
	⑤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⑥ 격리 또는 입원	⑦ 소송계류	⑧ 국외이주	⑨ 자금압박	⑩ 기타	⑪ 납기 미도래
비 율	0.0%	0.0%	0.9%	0.1%	5.0%	0.0%	9.2%
합 계	-	1,149,950	558,640,000	55,303,620	3,023,631,790	9,517,520	5,623,331,110
일반회계	-	1,149,950	558,640,000	55,303,620	5,824,750	9,517,520	5,623,331,110
특별회계	-	-	-	-	3,017,807,040	-	-

지방세 분야

- 지방세 수납액 183,025,806,160원은 총 수납액의 29.8%로,
2022회계연도의 수납액 204,725,141,310원보다 21,699,335,150원이 줄었다.
- 이는 보통세에서 21,222,054,640원이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이다.
(2023회계연도 182,244,890,070원 / 2022회계연도 203,466,944,710원)

세외수입 분야

- 세외수입 수납액 89,008,670,440원은 총 수납액의 14.7%로,
(경상적 세외수입 68,462,723,640원, 임시적 세외수입 10,768,173,18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777,773,620원)
2022회계연도 81,551,732,060원보다 7,456,938,380원이 늘어났다.
-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75,758,910원이 적게 수납된 대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712,838,240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전년 대비 1,919,859,050원 더 수납되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분야

- 지방교부세 수납액 14,989,847,650원은 총수납액의 2.48%이고
2022회계연도 22,136,073,570원 보다 7,011,497,770원이 더 많이
수납되었다.

조정교부금 등

-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41,156,292,820원은 총 수납액의 6.8%이고
2022회계연도 54,688,159,770원 보다 13,531,866,950원이 더 적게
수납되었다.

보조금 분야

- 보조금 수납액 174,317,022,130원은 총수납액의 28.86%이고
2022회계연도 217,635,989,560원 보다 43,318,967,430원이 더 적게
수납되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납액 109,671,160,004원은 총수납액의 18.16%이고,
예산현액 109,392,052,050원 보다 279,107,954원이 더 많게 수납되었다.

나. 특별회계

-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 수 납 액 (라=나-다)	비율(%)	
					다/가	다/나
2023	56,176,263,010	94,952,109,667	59,262,491,377	35,689,618,290	105.5	62.4
2022	53,561,135,980	93,209,468,724	55,542,935,574	37,666,533,150	103.7	59.6
증감	2,615,127,030	1,742,640,943	3,719,555,803	△19,391,976,130	1.8	2.8

- 2023회계연도 수납액 59,262,491,377원은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이 62.4%로
2022회계연도 수납액 55,542,935,574원보다 3,719,555,803원(2.8%)이 많게
수납되었다.
- 미수납액 35,689,618,290원은 징수결정액의 37.6%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7,415,061,0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18,274,557,220원이다.

-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100%)에 따른 것이고, 이월된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33%), 납세태만(33.9%), 폐업 또는 부도(16.5%), 자금압박(16.5%) 등에 따른 것이다.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 수 납
2023	382,560,000	518,341,309	393,668,439	0	124,672,870
2022	326,871,000	493,686,580	379,910,140	0	113,776,440

- 2023회계연도 수납액 393,668,439원은 예산현액의 103%로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75.9%로 2022회계연도의 76.9%에 비해 1%낮게 수납되었다.
- 미수납액 124,672,870원의 사유는 납세태만이다.

2) 주차장 특별회계

-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 수 납
2023	55,793,703,010	94,433,768,358	58,868,822,938	17,415,061,070	18,149,884,350
2022	53,004,269,980	92,705,185,261	55,152,428,551	1,991,369,310	35,561,387,400

- 2023회계연도 수납액 58,868,822,938원은 예산현액의 105.5%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63%로 2022회계연도의 59%로 4% 낮아졌다.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7,415,061,070원이며 사유는 시효소멸이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18,149,884,350원이며, 이월된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재산 6,035,614,100원, 납세태만 6,078,656,170원, 폐업또는부도 3,017,807,040원, 자금압박 3,017,807,040원이다.

3. 세 출

가. 일반회계

- 현 황 -

(단위 : 원)

구분	예 산 현 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비율(%)
					나/가
2023	640,014,664,050	526,246,369,229	26,745,228,450	39,965,061,813	82.2
2022	657,302,348,153	547,738,392,318	28,338,714,050	61,833,294,193	83.3
증감	△17,287,684,103	△21,492,023,089	△1,593,485,600	△21,868,232,380	△1.1

- 2023회계연도 지출액 526,246,369,229원은 예산현액의 82.2%로 2022회계연도의 83.3%보다 집행률이 1.1% 낮아졌다.
- 지출의 주요 비율은 보면,
 - 사회복지분야 223,038,866,963원(41%)
 - 일반공공행정분야 37,592,562,139원(7%)
 - 환경분야 35,517,438,238원(6%)
 - 기타 129,110,951,311원(24%)이다.
-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73건 2,269,739,000원이었고, 주요 사유는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청사 공공운영비 부족,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예산확보 등이었으며, 예산이체는 372건 68,351,831,570원으로 주요사유는 2023.1.1.자 조직개편이었다.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9,965,061,813원으로 예산현액의 6.2%로 2022회계연도의 9.4%보다 3.2% 낮아졌다.

- 집행잔액 사유 -

(단위 : 원)

보조금정산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409,281,541	251,310,740	3,599,047,922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909,111,188	29,224,110,422	1,572,200,000

나. 특별회계

- 현 황 -

(단위 : 원)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2023	합 계	57,176,263,010	13,235,607,320	710,175,990	101,608,360	42,128,871,340
	의료급여	382,560,000	321,238,209	-	61,320,570	1,221
	주차장	56,793,703,010	12,914,369,111	710,175,990	40,287,790	42,128,870,119
2022	합 계	53,561,135,980	14,818,511,384	427,759,010	683,595,939	37,631,269,667
	의료급여	326,871,000	274,351,361	-	52,518,139	1,500
	주차장	53,004,269,980	14,533,563,120	427,759,010	631,077,800	37,411,870,050
	기반시설	229,995,000	10,596,883	-	-	219,398,117

- 2023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지출액은 13,235,607,320원이며 예산현액의 23.1%로 지난해의 30.5%보다 2.8% 낮아졌다.
-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10,175,990원이고 집행 잔액은 42,128,871,340원으로 예산현액의 73.7%이며 2022회계연도의 70.2%보다 3.5%가 많아졌다.

○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행잔액 사유 -

(단위 : 원)

보조금정산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323,790	39,572,000	-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	1,368,969,550	40,678,006,000

4. 다음년도 이월비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다음연도이월비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63,119,184,080	27,455,404,440	9,012,715,000	18,442,689,440	43.5
일반회계	61,753,066,570	26,745,228,450	9,012,715,000	17,732,513,450	43.3
특별회계	1,366,117,510	710,175,990	-	710,175,990	51.9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중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27,455,404,44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745,228,450원, 특별회계는 710,175,990원이며,
사유별은 명시이월 9,012,715,000원, 사고이월 18,442,689,44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다.

5. 예비비 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3,963,206,000원으로,
저소득층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 사업 외 4건 1,713,00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77,017,8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35,982,2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다.

6. 기금의 결산

-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43,420,820,978	7,125,676,077	17,510,906,257	10,385,230,180	50,546,497,055
공공청사·공공시설 매입기금	23,634,054,196	5,075,246,767	5,075,846,767	600,000	28,709,300,963
체육진흥기금	178,817,773	△70,445,200	4,076,650	74,521,850	108,372,57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	575,131,556	16,248,770	32,079,770	15,831,000	591,380,326
노인복지기금	2,054,221,456	2,798,900	46,439,750	43,640,850	2,057,020,356
양성평등기금	1,381,714,413	45,727,738	69,759,738	24,032,000	1,427,442,151
중소기업육성기금	2,819,859,105	95,306,456	8,077,999,216	7,982,692,760	2,915,165,561
식품진흥기금	1,809,309,377	29,061,141	199,543,161	170,482,020	1,838,370,518
재난관리기금	4,710,443,573	1,795,817,865	2,012,655,365	216,837,500	6,506,261,438
도로굴착복구기금	3,549,848,981	36,391,210	1,436,927,720	1,400,536,510	3,586,240,191
자활기금	1,195,076,445	14,950,660	29,950,660	15,000,000	1,210,027,105
옥외광고정비기금	1,512,344,103	84,571,770	525,627,460	441,055,690	1,596,915,873

○ 현재 설치 관리하고 기금은 총 11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43,420,820,978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17,510,906,257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10,385,230,180원이며
-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7,125,676,077원이 증가된 50,546,497,055원이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평균 증가율 (%)
전년도말 조성액		20,984	40,511	41,300	40,346	43,421	19.3
당해 연도	조성액	30,706	21,681	14,914	13,245	17,511	36.45
	사용액	11,178	20,891	15,868	10,170	10,385	7.3
당해연도말 조성액		40,511	41,300	40,346	43,421	50,546	23.3

7. 채권의 결산

- 2023회계연도 채권은 26,638,173,690원으로 전년도 26,345,129,590원 보다 293,044,1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26,638,173,690	7,761,176,198	8,063,301,061	26,336,048,827
일반회계	4,301,610,410	66,645,198	121,000,598	4,247,255,010
특별회계	-	-	-	-
기 금	22,336,563,280	7,694,531,000	7,942,300,463	22,088,793,817

8. 채무의 결산

- 2023회계연도 채무결산 사항은 없음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결산

가. 지방공기업(중구시설관리공단)

-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25,260,044,000	25,091,937,278	△168,106,722
행정지원사업	14,907,355,000	5,498,706,187	△9,408,648,813
문화·체육사업	3,706,271,000	11,050,989,243	7,344,718,243
복지·공공사업	1,047,293,000	3,410,522,493	2,363,229,493
주차사업	5,599,125,000	5,131,719,355	△467,405,645

- 중구는 2007년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자본금 750,000,000원에 출자하여 설립·운영 중이다.
- 2023회계연도 재정지원은 25,091,937,278원으로
2022회계연도 25,260,044,000원보다 168,106,722원 감소(0.7%)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 분야에서 298.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나. 지방출자출연기관

-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503,278,000	5,807,510,000	5,601,817,000	5,775,898,000
(재)중구문화재단	6,503,278,000	5,807,510,000	5,601,817,000	5,775,898,000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	-	-	-

- 중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재)중구문화재단과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운영 중이다.

- 2023회계연도 출연금액은 5,775,898,000원으로
2022회계연도 5,601,817,000원보다 174,081,000원 증가(3.1%)하였으며,
이는 전액 (재)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고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은 2014년 이후 없다.

10.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가. 2023회계연도 공유재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	감소	
합 계		2,094,711,703,813	23,773,824,600	9,968,099,200	2,108,517,429,213
행정 재산	소 계	2,087,062,601,194	23,773,824,600	9,968,099,200	2,100,868,326,594
	공용재산	338,752,797,754	-	-	338,752,797,754
	공공용재산	1,748,309,803,440	23,773,824,600	9,968,099,200	1,762,115,528,840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468,295,199	-	-	1,468,295,199
건설중인재산		6,180,807,420	-	-	6,180,807,420

- 2023회계연도 현재 공유재산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2,094,711,703,813원보다 13,805,725,400원이 증가한
2,108,517,429,213원이다.

나. 2023회계연도 물품현황

(단위 : 개,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 보유현황	
수량	금액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409	12,718,668,929	489	2,296,553,704	23	664,962,360	1,875	14,350,260,273

- 2023회계연도 정수물품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2,718,668,92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489개(2,296,553,704원), 처분 23개(664,962,360원)으로
466개 1,631,591,344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보유현황은 1,875개 14,350,260,273원이다.

11.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 현 황 -

(단위 : 원)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마=가+나)
	계 (나=다-라)	증가액 (다)	지출액 (라)	
2,653,754,085	3,620,936,237	20,760,389,534	17,139,453,297	6,274,690,322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외 현금
전년도말 현재액(2,653,754,085원) 대비 3,620,936,237원 증가한
6,274,690,322원이다.
- 주요 사유로는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 등 기타에서
각각 33,809,000원, 2,619,942,915원, 2,170원씩 지출액이 증가액보다 작았다.

12. 재무제표의 결산

- 중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250,316	10.42	276,620	11.35
투자자산	22,299	0.93	22,120	0.91
일반유형자산	200,406	20.20	206,484	8.47
주민편의시설	485,096	59.88	485,495	19.92
사회기반시설	1,437,775	59.88	1,441,309	59.14
기타비유동자산	5,294	0.22	5,153	0.21
자산총계	2,401,186	100.00	2,437,181	100.00
유동부채	15,719	32.33	22,301	39.18
기타비유동부채	32,900	67.67	34,625	60.82
부채총계	48,619	100.00	56,926	100.00
고정순자산	2,111,013	89.73	2,137,796	89.81
특정순자산	72,457	3.08	65,635	2.76
일반순자산	169,067	7.19	176,824	7.43
순자산총계	2,352,567	100.00	2,380,255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2,401,186	-	2,437,181	-

- 2023회계연도말 중구의 자산은 2,401,186백만원이며, 전년도의 2,437,181백만원에 비해 35,995백만원(1.5%)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정자금 감소,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유동자산은 감소했으나, 기타유동자산(용익물권)은 증가하였다.

- 유동자산 26,304백만원(9.1%)감소, 비유동자산 141백만원(2.7%) 증가

- 또한 2023회계연도말 중구의 부채는 48,619백만원으로 전년도 56,926백만원 보다 8,307백만원(14.6%) 감소하였는데, 일반미지급금(보조금반납예정액) 및 소송충당부채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 유동부채 6,582백만원 감소, 비유동부채 1,725백만원 감소

13. 성과보고서

-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9개)-정책사업목표(68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치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 개, 천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68	146	39	89	18	539,481,976,549
감사담당관	1	1	2	0	1	1	213,381,150
홍보담당관	1	1	3	2	1	0	2,615,286,790
행정관리국	1	16	25	4	16	5	180,515,226,434
기획재정국	1	9	17	5	11	1	19,677,703,948
복지환경국	1	13	24	9	12	3	250,343,035,508
도시관리국	1	12	23	4	18	1	20,726,213,014
안전건설교통국	1	8	25	6	12	4	37,195,49,947
보건소	1	6	24	9	12	3	24,016,331,068
구의회	1	2	3	0	3	0	4,179,307,690

-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 146개 지표 중 87.7%인 128개 지표가 성과달성 및 초과달성 하였으나, 18개 성과지표는 미달성(12.3%)하는 결과가 나왔다.

Ⅱ. 결산검사 결과 총평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세입은 예산현액 660,190,972천원, 징수결정액 753,422,023천원, 수납액은 671,431,29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9.1%
 - 세출은 예산현액 660,190,972천원 대비 지출액이 539,481,977천원으로 집행률은 81.7%이다.
- 결과적으로, 2022회계연도에 비해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은 0.4%p 감소하였고 집행률은 2.6%p 증가하였다.

1. 세입결산액 감소, 세입 징수를 제고 대책 필요

- 2023회계연도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하락 및 경기 악화로 인해 세입 여건이 어려워졌으나, 코로나19 상황종료로 징수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
- 2023회계연도의 세입 현황을 보면,
세입은 671,431백만원으로 전년 710,895백만원 대비 39,464백만원(5.5%)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183,026백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의 감소로 전년 204,725백만원 대비 21,699백만원(10.6%) 감소,
세외수입은 107,188백만원으로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증대로 전년 98,123백만원 대비 9,065백만원(9.2%) 증가,

- 지방교부세는 14,990백만원으로
전년 22,136백만원 대비 7,146백만원(32.3%) 감소,
조정교부금은 41,156백만원으로
전년 54,688백만원 대비 13,532백만원(24.7%) 감소,
국·시비 보조금은 174,676백만원으로
전년 218,561백만원 대비 43,885백만원(20.1%) 감소하였다.

- 한편, 실제 수납액은 671,43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53,422백만원 대비 징수율이 89.1%이고,
전년도 징수율인 89.5% 보다 0.4%p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
2023	660,191	753,422	671,431	101.7	89.1
2022	710,863	794,065	710,895	100.0	89.5
2021	653,442	732,598	647,475	99.1	88.4

- 세입 징수율이 3년 연속 90%를 하회하고, 특히 2023회계연도는 코로나19 상황종료로 2022회계연도에 비해 징수 여건이 나아졌음을 고려할 때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또한 최근 3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021년 12.1%, 2022년 11.7%, 2023년 14.1%로 10% 이상 징수결정액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당초 세입추계가 부정확했음을 의미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세입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 개선 필요

- 국가 재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세입에 따라 결정된다.

세입을 조정하는 것은 예산 규모의 변경을 불러오므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을 조정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연말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상황이라면

법정 기한 내 예산의 의결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는 대부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 그 결과 매년 예산현액과 실제 세입이 달라지고

세입의 결손이나 초과가 발생하게 된다.

초과 세입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는 결국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재원의 발생을 의미하며,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 일례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단위: 천원)

회계연도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2023	500,000	1,206,799	144,804	1,061,995
2022	500,000	916,669	415,452	501,217
2021	500,000	1,149,112	234,929	914,183
2020	500,000	963,595	132,255	831,340

2020~2023년도 세입예산을 매년 5억원으로 편성하고,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징수결정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입예산 과다 편성으로 세입 결손을 초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한편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를 보면

(단위: 원)

회계연도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2023	-	-	405,900	405,900
2022	-	-	1,466,850	1,466,850
2021	-	-	929,890	929,890

폐번호판, 폐자전거 등의 폐고철 판매 수입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편성 된 것으로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이다.

- 비록 이 한 건은 미미한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중구 전체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매년 10% 이상 나고 있다.
- 세입예산이 미편성되면 그만큼 세출예산도 편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유용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3. 기본경비의 효율적인 운용 필요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예산과목 중 국내여비의 최근 3년간 결산 상황을 보면

(단위: 천원)

회계연도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2023	4,430,951	2,394,494	2,036,457	46.0
2022	4,184,220	2,265,352	1,918,868	45.9
2021	4,381,350	2,458,932	1,922,418	43.9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매년 40%를 웃돌고 있고

그 대부분이 각 부서별 기본경비로 편성된 국내여비이다.

- 기본경비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인 기준이 인원수가 되고, 관례적으로 부서 인원의 100%를 편성하지만 국내여비는 실비 성격으로 실제 출장이 발생할 때 지출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 결국 지속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적기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러한 경우는 다년간의 평균 집행률 등 통계치를 활용해서 일정 비율로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 발생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나 예산변경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으로 의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적합성 확보 필요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 지출의 가치를 극대화해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각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는 146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39개, 달성 89개, 미달성 18개로 87.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도 달성률 76.7% 대비 11%p가 증가하였다.
- 단순 수치상으로는 성과목표 달성도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측정산식이 무조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되어있거나 ‘달성 가능한 수준만큼 목표를 과소설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 성과목표 설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성과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사례1> 측정산식의 문제로 무조건 목표 달성됨

- 회계관리강화(계약): 측정산식이 (전자계약 건수/총계약 건수)*100인데 요즘은 모두 전자계약으로 하므로 당연히 100% 달성됨.
- 회계관리강화(물품): 측정산식이 (전자태그관리물품/전체물품)*100인데 물품관리는 모두 전자태크로 관리하므로 당연히 100% 달성됨.

사례2> 성과지표 목표의 과소 산정 사례

- 언론도보실적(건): 목표치 과소 산정

*비교: '22년 목표6,800건 vs 달성9,215건 / '23년 목표6,820건 vs 달성7,560건

- 의료급여 신규수급자수(명): 목표치 과소 산정

*비교: '22년 목표450명 vs 648명 달성 / '23년 목표450명 vs 달성596명

-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량(톤): 목표치 과소 산정

사례3>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함.

- 기획예산과의 무료법률상담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인 '효율적인 기획,조정 및 재정관리로 구정의 생산성 높이고 미래비전 제시한다'에 적합하지 않음.

*대체 성과지표 제안(안): 성과관리사업 성과종합달성 평균점수 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 생활안전과의 사회복무요원관리(인건비 지원율)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인 '민방위업무 효율 실시'와 무관

사례4> 보다 정확한 성과평가 위해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여성플라자의 성과지표가 <이용자수>인데

1개 이상은 '이용만족도'로 성과지표 개선해서 정확한 성과평가 도모 필요

*비교: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의 성과지표는 이용만족도임.

-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성과지표보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건수)로 성과지표 개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성과평가 가능.

5. 재정 운용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예산전용 지양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의회의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73건 2,269백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대폭 (32건 902백만원)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예산전용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용건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	1,020,996	1,020,996	0	39	39	0
2021	1,223,251	1,223,251	0	53	53	0
2022	1,367,219	1,344,219	23,000	41	40	1
2023	2,269,739	1,916,219	353,520	73	69	4

-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3회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73건의 사업을 추경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전용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 예산의 전용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 사업 계획의 정확한 수립 등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부적절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주민 편익 증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권장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발전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과 더불어 주민의 편익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이런 측면에서 민간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에게 제공한 사업은 높이 평가된다.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민간주차장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은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기여한다.
- '신세계 남산' 주차장의 일부(45면)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공개방한 사업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예산 절감의 일거양득을 이룬 사업으로 적극 권장되는 사업이다.
- 관내 급경사지 제설작업에 대비한 도로 열선 설치사업 또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제설담당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경사로가 많은 중구의 환경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와 더불어 공사 집행 및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이다.
-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현황(15건)

국 명	수검 부서	시정요구건수	시정요구사항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1	반복적인 삭감예산에 대한 추경편성 대책
행정관리국 (3)	행 정 지 원 과 (중구시설관리공단)	1	경영관리(예산운용) 부적정
	자 치 행 정 과	1	통장자녀 장학금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편성 미흡)
	체 육 관 광 과	1	국시비 보조사업의 불용 발생
기획재정국 (2)	기 획 예 산 과	2	재정 운용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예산전용 지양
			국내여비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복지환경국 (2)	복 지 정 책 과	1	주민참여예산 검토 부적정
	청 소 행 정 과	1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 불용액 차지 미흡
도시관리국 (1)	부 동 산 정 보 과	1	저소득 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저조
구 의 회	의 회 사 무 과	1	2022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확인
공통사항 (5)	감사담당관.환경과	1	보조금 관련 다수인민원 관리소홀
	기획예산과, 주차관리과	1	예비비(편성 및 결산) 제도에 대한 적법 운용 권고
	기획예산과 외 8개 부서 기획예산과/생활 안전과/가족정책 과/환경과(2건)/ 재무과(2건)/홍보 담당관/문화정책 과/생활보장과/ 주차관리과	1	잘못된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지표 목표 의 과소 산정사례 다수 발견
	세무1과,세무2과, 주차관리과	1	세입금(채권) 징수에 특단의 대책 요망
	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	1	예비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 수범사례(3건) : **적극적 영치업무로 세입 2배증대 (세무2과)**
 공공개방형 주차장 운영 예산절감 (주차관리과)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로 주민 편의 제공 (도로시설과)

시정 요구 사항

해 당 부 서	홍보담당관
권 고 내 용	반복적인 삭감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대책

□ 중구광장 발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 연도	본예산			증감 사유		예산 현액	집행액	잔액
	요구액	삭감액	의결액	추경	예산변경			
2021	170,662	76,642	94,020	36,000	33,331	163,351	162,816	535
2022	203,713	109,693	94,020	36,150	36,150	166,320	164,997	1,323
2023	189,522	80,000	109,522	69,000	-	178,522	175,480	3,042

-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189,522천원)에 대하여 의회 심의로 삭감(80,000천원)
 - 예산심의 하면서 의례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하고 있는 사례
 - 중구광장 연간 12회 발간 예산부족으로 추경(69,000천원)편성하여 예산현액(178,522천원)으로 집행결과(98.3%), 잔액(3,042천원)발생
- 2021,2022년 본예산 삭감 후 추경과 예산변경으로 예산현액을 증액 확보하여 집행하는 등 매년 같은 방법으로 본예산 삭감 후 추경과 예산을 변경하고 있음.
- 본예산 심의시 담당부서의 예산 심의 자료 제출을 성실히 제출하여 편성 요구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의결토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

- 본예산 심의시 의원의 지적사항 등 삭감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료 준비 제출
- 삭감에 대비하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예산액 타당성 확보
- 예산절감 방법으로 모바일 중구광장 구독자를 확충
 - 모바일 중구광장 전년대비 13,000여명 증가(현재 53,000명)

해 당 부 서	행정지원과(중구시설관리공단)
권 고 내 용	경영관리(예산운용) 부적정

□ 현 황

○ 2023년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경영분석 지표 중 발췌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산식	23년도	22년도	증감	전년 대비(%)	비고
자기자본 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본}} \times 100$	17.10%	19.19%	△ 2.09%	△ 10.9%	
부채비율	$\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times 100$	484.68%	421.17%	63.51%	15.1%	
인건비 비율	$\frac{\text{인건비}}{\text{총비용}} \times 100$	62.82%	51.81%	11.01%	21.2%	
인건비 대 영업수익 비율	$\frac{\text{인건비}}{\text{영업수익}} \times 100$	63.03%	65.56%	△ 2.53%	△ 3.9%	
직원 1인당 인건비 (단위: 천원)	$\frac{\text{인건비}}{\text{총 직원수}}$	41.024	31.445	9.579	30.5%	

(자료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p63~64)

○ 2023년도 경영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평가기관	평가 등급				비고
	가	나	다	라	
지방공기업 평가원			○		

-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는 “다” 등급임.

○ 공단의 회계(예산, 결산 등)를 통합하고 있음. 이는 기존 사회서비스사업단 회계를 분리 운영하다가 2023년도에 결산은 통합하였고 예산은 2024년도에 통합함.

□ 문제점

-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중구청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구민의 안전성, 편리성 등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에 특히 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됨.
- 공단의 부채항목은 연차수당, 퇴직연금운용자산, 예수금 등 비금융부채 항목이며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계정 재분류에 따라 전기에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연차수당을 동일기준으로 분석시 전년 대비 5.8% 감소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일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5.1% 증가함.
- 인건비 항목 또한 전기에 제외된 공단 평가급 및 사회복지시설 연차수당을 당기와 동일기준으로 분석 시 1인당 인건비는 3.29%(1인당 1,308천원 증가)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일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은 감사보고서의 경영분석지표상 1인당 인건비는 30.5%(1인당 9,579천원 증가)증가함

-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다소 저조함.
- 회계의 통합은 회계연도(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가 다르므로 기술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공단의 각종 통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정 권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재정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기에 중구 관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또한 사회서비스사업단의 회계연도가 다른 시설(어린이집)의 회계(예산, 결산)를 통합 운용하는 것은 기술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 차후에는 경영분석지표 작성 시 전기 지표값을 당기 기준과 동일하게 보정하도록 권고함.

해 당 부 서	자치행정과
권 고 내 용	통장자녀 장학금 불용액 과다 발생(예산편성 미흡)

□ 현 황

-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 장학생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고,
 -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 차감 후 지급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통장현황		장학금 지급		예산액	지출액	잔액
정원	현원	인원	지급액			
256	252	27	17,232	59,000	17,232	41,768

□ 지적사항

- 위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 편성시 관련 조례에 따르지 않고 통장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자 미달로 예산액 대비 71%가 불용됨.

□ 권고사항

-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수요파악 및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해 당 부 서	체육관광과
권 고 내 용	국시비 보조사업의 불용 발생

□ 현 황

- 체육관광과의 예산현액대비 4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비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조)	114,000	61,740	52,260	45.8%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잔액 발생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보조)	30,780	17,171	13,609	44.2%	선정 대상자들의 이용권 미사용에 따른 잔액 발생	

□ 권고사항

-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 이용수요의 회복속도 및 우리구 고령인구 분포를 고려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 중앙부처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홍보강화 계획 수립 및 이용권 사용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 불용액 발생의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해 당 부 서	기획예산과(전부서)
권 고 내 용	재정 운용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예산전용 지양

□ 현 황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회계별	전용 건수	전용액	비고
계	73	2,269,739	
일반회계	69	1,916,219	
특별회계	4	353,520	

- 2023회계연도 전용 건수는 73(일반회계 69건, 특별회계 4건)건임.
- 총 전용액은 2,269,739(일반회계 1,916,219천원, 특별회계 353,520천원) 천원임.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함.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의회의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전용하여야 하나 그동안 관행 또는 행정편의적으로 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3회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산 전용이 73건임. 이는 추경편성시 전용사업을 포함하여야 하나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용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됨.

□ 권고사항

-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변경, 추가 세입 등의 사업은 경정 처리하여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그 추경예산(안)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집행하시길 권고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추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정함.

해 당 부 서	기획예산과(전부서)																												
권 고 내 용	국내여비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 현 황 ○ 2023 국내여비 예산편성 산출내역 - 부서별 정원대비 산출기준 90%~100% 예산편성 ○ 2023 국내여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table><tr><th>구분</th><th>예산현액</th><th>지출액</th><th>불용액</th><th>예산현액 대비 불용률</th></tr><tr><td>총계</td><td>4,513,475</td><td>2,493,145</td><td>2,020,330</td><td>45%</td></tr><tr><td>구청 계</td><td>4,096,097</td><td>2,319,653</td><td>1,776,444</td><td>43%</td></tr><tr><td>보건소 계</td><td>417,378</td><td>173,492</td><td>243,886</td><td>58%</td></tr><tr><td>동주민센터 계</td><td>944,700</td><td>692,977</td><td>251,723</td><td>27%</td></tr></table> ※ 감추경 1개 부서 : 민원여권과 50,400천원 ○ 부서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구청 3~82% 보건소 39~72% 동주민센터 13~39%로 편차가 있음. □ 지적사항 ○ 국내여비 예산을 부서별 정원대비 산출기준 90%~100%로 일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총 45%의 불용률이 발생함. □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시 기준을 각 부서간의 균형을 유지, 기본경비의 설정기준 마련, 전시성·소모성,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 예산편성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총계	4,513,475	2,493,145	2,020,330	45%	구청 계	4,096,097	2,319,653	1,776,444	43%	보건소 계	417,378	173,492	243,886	58%	동주민센터 계	944,700	692,977	251,723	27%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총계	4,513,475	2,493,145	2,020,330	45%																									
구청 계	4,096,097	2,319,653	1,776,444	43%																									
보건소 계	417,378	173,492	243,886	58%																									
동주민센터 계	944,700	692,977	251,723	27%																									

해 당 부 서	복지정책과
권 고 내 용	주민참여예산 검토 부적정

□ 현 황

- 약수동에서 제출한 「거동불편 어르신 안부살피미 사업」이 2023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됨.
- 사업대상은 약수동 거주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10명이며
- 사업내용은 거동불편 독거어르신에게 월1회 식료품 전달 및 안부를 살피고,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민간후원 연계를 확대하는 목적임.
-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사무관리비 (홍보물품제작)	560	504	56
사회보장적수혜금 (식료품구입)	1,440	1,440	0

□ 지적사항

- 위 사업은 시제품 밀키트, 밀반찬을 구입 전달하는 사업으로, 2023 주민참여 예산사업 검토시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어야 하며
-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전체 동주민센터 공통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함.

□ 권고사항

-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추진시 유사·중복여부, 형평성 등 다각도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 당 부 서	청소행정과
권 고 내 용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 불용액 처리 미흡

□ 현 황

(단위 : 천원)

분 야	세출예산	지출금액	불용액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25,207	2,479,142	536,065	

○ 202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체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가액 (87.745%) 반영으로 톤당 처리 단가 감소로 처리비용 감소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413대)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소

□ 권고사항

○ 민간위탁 처리업체 제한공개입찰로 낙찰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예산액이 감소됨을 충분히 인지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536,065천원을 감추경후 다른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함.

○ 민간위탁 사업 2년 계약으로 2024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불용액 결손 처분을 시기에 맞게 감추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권고함.

해 당 부 서	부동산정보과
권 고 내 용	저소득 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저조

□ 현 황

- 저소득 가구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A)	지출액(B)	불용액	집행율 (B/A)
2023	25,000	14,105	10,895	56.42%

□ 권고사항

- 저소득 가구 중개수수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업임을 감안하여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협조(전입 저소득가구)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구청에서도 전입 온 누락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고는 있으나, 향후 좀더 발전된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지원을 받은 분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 및 지원규모(400,000원)의 적정여부도 분석하여 지원 방안 등 적극적 선제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권고함.

해 당 부 서	의회사무과
권 고 내 용	2022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확인

□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22 년 A	2023 년 B	2024 년 C	증감액		2022 D	2023 E	증감 액 E-D	2022 F	2023 G	증감 액 G-F	2022 H	2023 I	증감액 I-H
				B-A	C-A									
효율적인 의회운영	466,326	632,295	407,316	165,969	-59,010	298,847	476,067	177,220	123,204	69,396	-53,808	41,276	87,488	46,212
의정공통 업무지원	848,356	825,846	834,704	-22,510	-13,652	678,233	757,159	78,926	-	-	0	170,123	68,686	-101,437
인력운영비	2,015,805	2,724,096	2,909,853	708,291	894,048	1,388,635	2,312,175	923,540	-	-	0	627,120	411,920	-215,200
간행물발간 및 대외홍보	139,740	140,142	93,400	402	-46,340	66,443	127,231	60,788	34,142	-	-34,142	39,155	12,910	-26,245
계	3,470,227	4,323,037	4,245,273	852,810	775,046	2,432,158	3,672,636	1,240,478	157,346	69,396	-87,950	877,674	581,005	-296,669

○ '22 결산검사 권고사항

☞ 불필요한 예산편성 지양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요망

○ 조치사항 :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확인 결과 :

- '22년 대비 '23,'24년도 예산액 증가 사유로 결산검사위원 기타보상금, 교육비와 교섭단체 운영지원금 및 업무추진비, 임기제 등 채용 인건비, 홈페이지 서버 자산취득비 신규 등 예산 증액

- 예산 지출 집행은 '22년(2,432,158천원),

- 불용액은 '22년(877,674천원) 과 '23년(581,005천원) 으로 ▽296,669천원 감소

- 신규 예산편성으로 증액된 예산 외 사업 검토하여 '24년도 예산 삭감

□ 권고사항

○ 향후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함

해 당 부 서	감사담당관/환경과
권 고 내 용	보조금 관련 다수인민원 관리소홀

□ 현 황

○ 민원 내용

-민원명 : 감사청구서

-민원인 : 마00(15명)

-발생일시: 2023.6.14

-민원인 요구사항: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사용처 감사 요구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감사를 요구하고 미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청구함

○ 보조금 집행현황 (2023년도)

(단위 : 천원)

과목	세부목	예산액	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예산집행절차)
					정산액	절감액	
區자연보호 협의회관리	계	59,200		59,190		99	
	민간경비 사업보조	29,000		29,000			區 → 區협의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9,200		29,000			區 → 區협의회 → 洞협의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		901		99	
필洞자연보호 협의회		1,800	0	0	1,800		區 협 의 회 → 洞 협 의 회

○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카드 작성하고 주관부서(환경과)에 “민원사항 완전 해소” 시 민원순찰팀에 통보토록 조치(감사담당관→환경과)

○ 매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집행상의 부적정 내용이 있거나 회계연도 내 집행잔액이 있을 시 시정 및 환수 조치 하고 있음
(환경과→감사담당관)

○ 추진상황(일정별) 및 조치사항: 區협의회-필동협의회 간 협의 권고(진행중:관리카드)

○ 감사청구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부서에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통보한 사실 없음(환경과)

○ 민원처리의 지속적인 확인점검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발생부터 종료시까지 처리 진행 상황 등 업무처리 적정여부를 확인점검 하여야 함
-처리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치 않은 민원을 진행 중으로 관리(감사담당관)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제27조 ②항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 민원인 요구사항에 적합한 행정행위(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사용처 감사)을 실시한 후 결과 조치 및 통보(환경과)

○ 민원처리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확인·점검으로 민원 완전 해소 (감사담당관)

해 당 부 서	기획예산과/주차관리과
권 고 내 용	예비비(편성 및 결산) 제도에 대한 적법 운용 권고

□ 현 황

- 예비비 편성 및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명/사업명	예산현액 (2차 추경)	지출액	불용액	%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0,678	-	40,678	100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따라,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여유 재원의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등 반복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것임.

□ 권고사항

-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결산의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4조(예비비)에 따라 예비비는 회계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1%) 이내로 계상하고 여유재원은 서울특별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므로 다음부터 시정을 권고함.

해 당 부 서	기획예산과 외 8개 부서 기획예산과/생활안전과/가족정책과/환경과(2건)/재무과(2건)/ 홍보담당관/문화정책과/생활보장과/주차관리과
권 고 내 용	잘못된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지표 목표의 과소 산정 사례 다수 발견

□ 현 황

○ 잘못된 성과지표 선정 사례

-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함.

기획예산과	- <u>무료법률상담 성과지표</u> 는 <정책사업목표: 효율적인 기획,조정 및 재정관리로 구정의 생산성 높이고 미래비전 제시한다>에 적합하지 않음. ->대체 성과지표 제안(안): 성과관리사업 성과종합달성 평균점수(점) 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률
생활안전과	- <u>사회복무요원관리%(인건비 지원율)</u> 성과지표는<정책사업목표: 민방위업무 효율 실시>와 무관 -> 개선제안: 삭제 요

- 측정산식의 문제로 무조건 목표 달성됨

재무과	- <u>회계관리강화(계약)(%)</u> 의 측정산식이 (전자계약 건수/총계약 건수)*100인데 요즘은 모두 전자계약이기에 당연히 100% 목표달성됨. -> 개선사항: 성과지표 삭제
재무과	- <u>회계관리강화(물품)(%)</u> 의 측정산식이 (전자태그관리물품/전체물품)*100인데 물품관리는 모두가 전자태그관리이기에 당연히 100% 달성됨. -> 개선사항: 성과지표 삭제

- 보다 정확한 성과평가 위해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족정책과	- <u>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여성플라자의 성과지표</u> 가 <이용자수>인데 1개 이상은 <이용만족도>로 성과지표 개선해 정확한 성과평가 도모 *비교: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의 성과지표는 이용만족도임.
환경과	- <u>에코마일리지 가입률(%)</u> 성과지표보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건수)로 성과지표 개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성과평가 가능.
문화정책과	- 기존 스마트 도서관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설치 운영하겠다는 성과목표를 계획한 것은 원인파악 미흡,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달성률이 0%임 -> 개선사항: 달성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요망

□ 현 황

○ 성과지표 목표의 과소 산정 사례

홍보담당관 (결산서 p498)	-언론도보실적(건): 목표치 과소 산정. *비교: 2022년 6,800건 목표-9,215건 달성/23년 6,820건-7,560건 -SNS홍보실적(횟수): 목표치 과소 산정. *비교: 2022년 2,600회 목표-3,725회 달성/2023년 800회-2,183회
생활보장과 (결산서 P627)	-의료급여 신규수급자수(명): 목표치가 과소 산정/목표치를 450건으로 고정하지 말고 실제 목표를 산정해야 함. *비교: 2022년 450명 목표-648명 달성/ 2023년 450명-596명
환경과 (결산서 P641)	-폐수배출업소 관리률(%): 목표치를 72%로 과소 산정해 목표달성 용이 *비교: 2022년 72%목표-112%달성/ 2023년 72%-194%
주차관리과 (결산서 P719)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건): 22년 달성실적 고려 23년 목표 과소산정 *비교: 2022년 15만건-173,484건달성/ 2023년 15만건-165,666건 -공영주차장 보수준공공사 및 공유(개방) 실적(면,개소수): 22년 실적대비 23년 목표 과소 산정 *비교: 2022년 100건-385건/ 2023년 105건-440건

□ 권고사항

-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성과지표의 목표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이전연도의 실적과 달성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를 산정해야 함.

해 당 부 서	세무1과/세무2과/주차관리과
권 고 내 용	세입금(채권) 징수에 특단의 대책 요망

□ 현 황

- '23회계연도 세입 결손처리(정리보류)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계	결손처리 사유별 현황			
		소멸시효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평가액 부족 등)
비율	100%	87.3%	12.3%	0.2%	0.2%
합계	21,076,955	18,396,548	2,599,630	45,649	35,126
일반회계	3,661,894	981,487	2,599,630	45,649	35,126
특별회계	17,415,061	17,415,061	-	-	-

- 결손처리(정리보류) 총액은 21,076,955 천원임. 이는 일반회계 3,661,894 천원, 특별회계17,415,061 천원임.
- 결손처리 사유별 현황은 소멸시효완성 87.3%(18,396,548 천원), 무재산 12.3%(2,599,630 천원), 행방불명, 기타 등 0.4%임.

□ 문제점

- 세입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지방재정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확보된 세원을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 하는 것은 납세 정의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법규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소명을 하나, ‘중구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였다고 보기에선 아니라고 사료’ 됨. 그러므로 시효완성 전에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세금(세외수입 포함)은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이 우려됨.

□ 권고사항

- 위 법규 등에 따르면,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중구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
- 시효소멸(완성)로 인한 세입 결손처리는 납세 정의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되므로, 세입금(채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38기동대에 위탁하거나, TF를 구성하여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채권)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망됨.

해 당 부 서	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
권 고 내 용	예비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 현 황

○ 예비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사례

- 가족정책과 : 지출결정액 대비 48.1%에 해당하는 지출잔액 발생
- 생활보장과 : 지출결정액 대비 12.1%에 해당하는 지출잔액 발생(지원대상 선정이 명확한 사업성격 상 12.1%의 잔액 발생은 과다 발생으로 볼 수 있음)

(단위: 원)

조직	단위/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정책과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어린이집 특수사업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0,000,000	31,101,130	28,898,870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저소 득층 한시 특별난방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9,600,000	34,800,000	4,800,000

○ 예비비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한 2개 사업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 어린이집 난방비지원: 어린이집 38개소(직장,법인지원 제외)의 전년도 대비 증가된 22.12월~23.2월 난방비 지원/ 월평균 15,000천원~20,000천원 요금증가 예상해 지출 결정
-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서울형기초보장 351명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23.1.30~1.31추가책정 예상- 예비 45명 추가예산 반영)

○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예산편성 필요

- 가족정책과 : 23.1월 청구분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이 15,127천원임을 사전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0천원x3개월로 산출하여 지출결정액에 과다반영, 지출잔액 발생.
- 생활보장과 : 23.1.30~1.31(2일)의 추가책정 예상인원을 전체 지원대상자 351명의 12.8%에 해당하는 45명으로 산정해 지출결정액에 과다 반영, 지출잔액 발생.

□ 권고사항

- 예비비 지출의 시급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지출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해 당 부 서	세무2과
지 적 내 용	적극적 영치업무로 세입 2배증대(수범사례)

□ 현 황

○추진배경

- 체납차량 단속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증가 없이 시·구 공영주차장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총43개소]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세수증대(총 24개소 - 노외20, 노상1, 부설2, 구청사1)

☞ 서울시 자치구中 중구만 최대 운영

- 區 공영주차장(24개소) 연계 체납차량 실시간 알림시스템 구축

- 市 공영주차장(19개소) 입·출차 정보 연계한 영치

□ 성 과

○ 징수실적

- 2023년 영치 목표 1,660대 대비 3,240대 영치,

(단위 : 대/백만원)

2023년		2022년		증 감 (증 감 율)	
영치대수	징수액	영치대수	징수액	영치대수	징수액
3,240	892	1,825	460	1,415(78%)	432(94%)

□ 수범사례

○ 세수증대 기여

- 시스템 도입으로 영치대수는 1,825대(2022) → 3,240대(2023)로 1,415대증가(195 %)하여 업무효율 증대

- 영치대수 증대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460백만(2022) →892백만 (2023)로 94% 증가하여 2배이상 세수증대함.

해 당 부 서	주차관리과
지 적 내 용	공공개방형 주차장 운영 예산절감(수범사례)
□ 현 황 ○ 공공개방형 주차장 운영현황 가.명칭 : 신세계 남산 공공개방형 주차장 나.목적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공공개방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민들에게 개방 다.주차면수 : 45면(지하3층 일부) 라.이용주민 : 중구거주민 (장충동 및 다산동 위주) 마.운영시간 : 24시간 바.주차요금 : 월7만원(월정기주차) 사.주차장 관리운영 : 중구시설관리공단(거주민 배정등) □ 예산절감 효과 ○ 공영주차장 건립대비 예산절감 효과 : 약49.5억원 (45면 개방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액) □ 수범사례 ○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공공개방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하3층 일부 45면(전체188명의 24%)을 다산동,장충동 주민들에게 월정기주차장을 제공함으로써 주차장 건립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였음.	

해 당 부 서	도로시설과
권 장 내 용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로 주민 편의 제공(수범사례)

□ 현 황

- 겨울철 선제적 제설대책을 위한 스마트 친환경 도로 열선 설치로 주민 편의 제공
 - 예산확보 : 행안부 특별교부금 4억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5천만원, 서울시 재난기금 8억6천만원, 구비 4억5천만원

○ 도로열선 설치 현황

(22 개소)

연 번	동 명	위 치	예산(단위 : 백만원)
1	신당5동	퇴계로90길 일대(신당하이베르)	100(특교금)
2	약수동	동호로5길 일대(남산타운아파트)	310(특교금)
3~4	장충동	동호로25가길 21 외1곳	400(특교금)
5	중림동	만리재로21길 9	
6~8	다산동	동호로11라길 33 외2곳	450(구비)
9~10	중림동	만리재로37길 43 외1곳	350(특교금)
11	필동	필동로8길 63	350(특교금)
12	신당5동	낙계로 130	
13~16	다산동	동호로17 다길 12 외3곳	390(특교금)
17~18	약수동	동호로8길 17 외1곳	360(특교금)
19	다산동	동호로 17가길 2	
20	중림동	만리재로37길 43	
21	신당5동	중림로2길 3	325(기금)
22	약수동	동호로 5길	360(기금)

- 중구 관내에는 고지대가 많아 겨울철 조금만 눈이 내려도 주민들이 낙상 사고가 다수 발생되던 곳에 선제적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권장사항

- 고가의 공사비가 소용되는 열선사업에 대해 예산확보가 중요해 보임 최선의 노력으로 추가 설치시 필요한 예산을 조기확보 고지대 도로 열선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람